

8. 指定業者인 登錄業者의 登錄變更 申告에 關한 質疑

住管 58511-944, 1996. 4. 8

○ 질의요지 :

지정업자인 등록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등록주택사업자협회를 경유하여 등록권자에게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2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6항의 규정에서 등록업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주택사업자협회를 경유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등록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정업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사항변경신고서를 건설교통장관에게 제출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정업자인 등록업자는 별도로 등록권자에게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